

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문화재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양하고, 나아가 민족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우리 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(안 제4조)
-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(안 제5조)
-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(안 제6조, 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및 문화재교육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- 도민에게 지역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수립, 사무의 위탁 등의 내용을 조문에 포함하였으며 조례의 목적, 조문의 내용 등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. 끝.